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군용 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에 주민이 주민등록을 둔 건축물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 기준을 완화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 구역에 포함 가능한 경계기준 신설(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도시지역은 구역에 연접한 지면, 비도시지역은 공동생활권을 고려,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명확화(안 제22조 제2호 수정)

- 1)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관련 법령정비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조항의 의미를 국민들이 더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실행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의 요건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의 의미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우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 지물의 경계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생략) <u><신 설></u>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u> <u>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u> <u>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u> <u>③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⑤ -----제 4항에 따른</u> ----- -----
<u><신 설></u>	
<u>② (생략)</u>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 ----- ----- ----- -----.
④ (생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생략)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u>집행을 받지 않기로</u>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 <u>집행이 면제된 날부터</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환경소음팀	
연 락 처	(02) 748 - 5894